

중국의 반덤핑 제도 과제와 대응방안

A Study on the issues and measures of the China's Anti-dumping law

오문갑(Moon-Kap Oh)

세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IV. 중국의 반덤핑제도 대응방안 |
| II. 덤핑제도의 판정과 피해 적용 규정 | V. 결 론 |
| III. 중국 반덤핑제도의 기본구조 | 참고문헌 |
| | ABSTRACT |

국문초록

반덤핑제도는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덤핑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관세조치로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 제도이다. 중국의 경우 반덤핑 관련 법령에서 행정재심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반덤핑조례', '반덤핑신규 수출 자재심사 잠정규칙', '반덤핑 관세 환급 잠정규칙' 등이 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2002년 첫 조사 개시가 이루어진 후 2004년부터 시작하여 사건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조례가 급변 개정을 거쳐 구 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실효성과 구체성의 결여를 상당 부분 보완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동 조례는 기본적으로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미국, EU 등 선진국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례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있다.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WTO 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해 국내법에 대해 폐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반덤핑법도 그 중의 한 부분이지만 WTO 규범에 완전히 일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중국, 반덤핑 제도, 운용, 대응방안

I. 서론

중국에서 반덤핑제도와 관련된 최초의 입법은 1994년 5월 12일 제정된 구 대외무역법(對外貿易法)이며, 동법 제30조는 반덤핑제도와 관련한 일반적 규정이다 이후 동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7년 3월 25일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례가 공포되었다. 이후 중국의 WTO가입에 대비하여 조례 중 반덤핑관련 규정은 2001년 11월 26일 반덤핑조례에 의해 대체 되었다.

동일한 시각에서 중국대외무역법도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또 이로 인해 국내에 이미 설립된 관련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 혹은 그 위협을 야기하거나 국내 관련 산업설립에 실질적 장애가 될 경우 국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 혹은 피해의 위협, 장애를 제거하거나 경감 할 수 있다”¹⁾고 규정하고 반덤핑 조례 역시 “덤핑은 정상거래과정에서 수입상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출가격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에 수입되는 경우를 말한다”²⁾고 규정하고 있다.

둘 이상의 국가에서 이러한 가격의 차별은 상호 분리된 불완전 경쟁시장에서만 가능하다. 즉 가격차별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분리된 시장이 있어야하고 또 이들 시장이 서로 다른 수요의 탄력성을 가져야하고 당해물품의 생산자가 국내시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밖에 제42조는 기타 국가나 지역³⁾의 물품이 제3국 시장에 덤핑 수출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또는 그 위협 및 국내산업 육성에 실질적인 장애를 야기할 경우 제3국 정부와 협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50조는 무역구제조치의 우회에 대응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대외무역법이 반덤핑조치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주는 한편, 반덤핑조례는 현재 중국 반덤핑조치의 주된 법규이다.

중국 상무부(商務部)의 전신인 대외무경경제합작부(對外貿易經濟合作部)는 반덤핑조례의 공포 후 2002년 1월 16일 반덤핑조사공청회잠정규칙을 공포하였고, 2002년 2월 10일 반덤핑조사개시잠정규칙을 공포하였으며, 2002년 3월 13일 반덤핑가격약속잠정규칙, 반덤핑 신규수출자 재심잠정규칙, 반덤핑관세환급잠정규칙, 덤핑·덤핑마진중간재심잠정규칙, 반덤핑 조사공개 정보열람 잠정규칙, 반덤핑표본조사잠정규칙, 반덤핑 현지조사 잠정규칙, 반덤핑조사 정보공개 잠정규칙, 반덤핑설문조사잠정규칙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후 2002년 12월 13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반덤핑물품범위조정절차에 관한 잠정규칙을 제정·공포하였다. 같은 날, 현재

1) 중국대외무역법 제30조.

2) 중국반덤핑조례 제3조.

3) 중국은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이 WTO회원임을 감안하여 관련법에 지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국가개념에는 국가가 아닌 지역개념 역시 포함하게 된다.

상무부에 의해 통합된 국가경제무역위원회(國家經濟貿易委員會)는 산업피해조사공청규칙을 제정·공포하였고,⁴⁾ 2003년 10월 17 새로 설립된 상무부가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밖에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도 2002년 11월 21일 반덤핑행정안전심리규정을 제정·공포하였다. 또한 상무부는 2004년 10월 1일과 2006년 8월 4일에 각 산업피해조사공개 정보열람방법, 산업피해조사정보열람 및 정보공개 규정을 제정·공포하였다.

한국의 경우, 반덤핑관세제도는 1963년 12월 관세법에 “부당 염매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소로 도입되었고, 1978년 12월에는 신청요건, 사실조사, 잠정조치 절차를 규정했다. 1983년 12월 “반덤핑관세제도”로 개칭하고 잠정조치의 요건 및 기한 등을 정하였으며, 가격약속제도를 도입했다. 1986년 4월 GATT 반덤핑협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했다. 반덤핑관세부과를 위한 덤핑수입, 국내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요건을 규정했으며, 조사신청, 조사절차, 잠정조치, 약속제의 및 수락 등과 같은 절차적 요건을 정했다. 1993년 12월에는 관세법을 개정하여 자동종료 및 재심규정을 두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덤핑관세 부과신청의 접수 및 조사개시결정을 재무부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했다. 1994년 12월에는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조사신청자격, 조사개시결정, 덤핑마진산정, 산업피해, 약속, 재심 등 제반기준과 절차를 반덤핑협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⁵⁾ 현재, 한국은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규칙,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신청·조사·판정에 관한세부운영규정 및 무역위원회의 세부지침을 통해 반덤핑제도를 구축하였다. 단지 무역위원회의 세부지침은 예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외부 에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양국의 반덤핑제도 법적 근거를 비교하여 보면, 중국의 경우 20개에 가까운 법령들을 통해서 이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이 비교적 잘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고, 반덤핑조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자세한 사전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원의 기구개혁을 거치면서 여러 부서에서 제정한 법령들이 산재하여 있다는 비판도 면치 못 할 것이며, 실제로 법령과 법령 사이에 중복되는 규정 심지어는 일부 일치하지 않는 규정도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반덤핑협정과 반덤핑조례에는 모두 최종판정에서 확정된 반덤핑관세가 잠정반덤핑관세 또는 예치된 보증금 액수보다 줄 경우의 차액의 보충 징수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반덤핑가격약속잠정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최종판정에서 확정된 반덤핑관세가 잠정반덤핑관세 또는 예치한 보증금 액수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을 보충 징수하여야 한다.⁶⁾ 한국의 경우, 이와 달리 법령의 체계가 명백하고, 상대적으로 몇 개의 법령에

4) 동 규칙들은 상무부 2003년 제30호 공고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명칭 대신 상무부로 변경한 후 사용하고 있다.

5) 이병호, “한국무역구제법의 발전과 과제,” 『무역구제』 제1호(2011. 1), 16면.

6) 최송자, 『중국 무역구제제도의 이해』(서울:한국학술정보, 2006), 230면.

집중되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들 법령보다 조사기관의 실무지침이 중요한 판단근거로 되고 있으며, 단지 이러한 실무지침은 비공개라서 업체들이 어느 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중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실무지침을 갖고 있으며 이들 역시 비공개라서 문제가 된다.⁷⁾ 또한 한국의 경우, 헌법에 조약과 국내법의 관례를 명시함으로써 반덤핑협정을 포함한 WTO협정을 국내에서 적용 가능하며, 또한 조사기관도 조사 시에 적용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WTO협정의 국내 직접적용이 아니라 국내 법률을 통한 수용을 택하고 있기에 단지 참조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WTO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세계에서 반덤핑조사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인바, 1995년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중국을 상대로 개시한 반덤핑 조사는 551건, 그 중 반덤핑조치를 부과한 건수는 397건에 달한다. 동일시기 한국의 해당수치는 235건, 139건으로 한국은 중국에 이어 2위 반덤핑 대상국으로 되었다. 동일기간 내에 중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25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18건의 반덤핑조치를 부과함으로써 한국은 일본(27건의 조사개시와 20건의 반덤핑조치 부과)에 이은 중국의 2위 반덤핑조치 대상국으로 되고 있다. 또한 동일기간 내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19건의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였고, 13건의 반덤핑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은 한국의 1위 반덤핑조치 대상국으로 되고 있다. 이렇듯이 중국의 무역관계에 있어서 반덤핑제도는 중요한 지위를 가지며, 양국이 서로 간에 상대국의 반덤핑제도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는 세계통상질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반덤핑제도에 대해 주요특징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덤핑제도의 판정과 피해 적용 규정

1. 덤핑의 정의

중국 반덤핑조례(아래 ‘반덤핑조례’로 약칭) 제3조 제1항과 한국 관세법(아래 ‘관세법’으로 약칭) 제51조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를 덤핑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중한 양국의 반덤핑법령에서도 수입물품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이 덤핑의 판정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이다.

7) Tian Yu, “The 10 Major Problems With the Anti-Dumping Instrumen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urnal of World Trade*, Vol.39, No.1(2005), p.99.

1) 정상가격

반덤핑조례 제4조와 관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 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가격 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 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3국내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따라서 정상가격의 정의 및 산정방법에 대해 한중 양국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단지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비 시장 경제국가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즉, 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 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수입물품이 그 특수 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경우에는 그 재판매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과 수입물품이 그 특수 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가 재판매된 실적이 없거나 수입된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으로 본다.

2)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반덤핑조치는 수입물품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인 덤핑마진에 대한 대응조치다. 따라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가 필수적이다. 반덤핑조례 제6조 제3항은 덤핑마진의 확정은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거래의 가중평균 가격과의 비교에 기초하거나 각각의 거래에 기초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에 기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반덤핑조례 제6조 제4항은 상이한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수출가격이 현저히 달라 가중평균 대 가중평균 또는 거래 대 거래의 비교방법에 근거하기 어려운 경우 가중평균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상가격이 개별 수출거래가격에 비교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법령에는 이러한 비교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상술한 비교방법은 반덤핑 협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또한 실제에 있어서도 적용하고 있으므로 구제가 될 바는 아니다.

2. 피해의 판정

수입물품의 덤핑에 대한 대응조치가 취해지기 위해서는 덤핑이 수입국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피해요건은 수입물품의 덤핑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 무역활동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덤핑조례 제7조 제1항과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피해는 덤핑으로 인하여 이미 확립된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이미 확립된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의 위협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중국은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 제4조에서 그 개념들에 대해 진일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실질적인 피해’란 국내 산업에 대해 이미 야기한, 무시할 수 없는 피해를 가리키고, ‘실질적 피해위협’이란 국내 산업에 대해 아직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지만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이 증거에 의해 표명되고 있는 명백하게 예견 가능한, 긴박한 상황을 가리킨다.

또한 반덤핑조례 제8조 제1항,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 제7조와 관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국내산업 생산량·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 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단지 여기에서 한국의 경우 기술개발도 검토요소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반덤핑조례 제9조 제1항과 관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과,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덤핑물품이 2개국 이상으로부터 수입되었고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경우 덤핑물품이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을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 국가로부터 수입한 덤핑물품의 덤핑마진이 2% 미만인 아니고 수입물량이 무시할 만한 수준에 속하지 않고, 덤핑물품 사이 및 덤핑물품과 국내동종물품 사이의 경쟁조건에 근거하여 누적평가가 적절할 때이다. 수입물량이 무시할 만한 수준은 한 국가로부터의 덤핑물품 물량이 동종물품 총 수입물량의 3% 미만일 경우를 가리키는데, 수입물량이 3% 미만인 여러 국가의 총 수입물량이 동종 수입물량의 7%를 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반덤핑산업 피해조사규정 제8조, 관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의하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조사 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수입국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가능성,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 상태 등이다. 이밖에 중국은 국내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 장애를 확정하기 위한 요소들도 규정하고 있는데, 즉 국내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 장애를 확정함에 있어 상술한 요소 외에도 아래의 요소들을 심사하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⁸⁾ 국내산업의 설립이나 설립계획 상황, 국내수요의 증가 상황 및 그 영향, 덤핑수입물품의 국내시장 상황에 대한 영향, 덤핑수입물품의 후속 생산능력과 국내시장에서의 발전추세 등이다.

1) 국내산업

반덤핑조례 제11조 제1항과 관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하면, 국내 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에 의한 생산 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 생산 사업으로 한다.

이처럼 국내산업의 정의에 대한 양국의 규정은 동일하다. 하지만 동종물품에 대한 규정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반덤핑산업 피해조사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르면, 동종물품은 덤핑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말하며 동일한 물품이 없는 경우, 덤핑수입물품과 특성이 제일 비슷한 물품을 동종물품으로 한다. 동종물품의 확정시 물리적 특징, 화학성능, 생산설비와 기술, 물품용도, 물품의 대체 가능성, 소비자 및 생산자의 평가, 판매경로, 가격 등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즉 중국의 경우 동종물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평가하여야 할 요소들은 더욱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도 동일한 물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동종물품의 정의와 더불어 “덤핑

8)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 제9조.

수입물품의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은 국내 동종물품을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 만약 생산 기술, 생산자의 판매와 이윤 등 기준을 근거로 국내 동종물품을 다른 물품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국내 동종물품을 포함한 제일 좁은 물품분류 또는 물품범위에 근거하여 덤핑수입물품의 영향을 확정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물품분류 또는 물품범위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⁹⁾

한편 중국은 반덤핑조례 제11조 제2항에 특수상황에서 국내의 한 지역시장 생산자가 동 시장에서 전부 또는 거의 전부의 동종물품을 판매하여 동 시장에서 동종물품의 수요는 국내 기타 지역의 생산자에 의해 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닐 경우 하나의 단독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영토가 넓은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특정지역을 한정하여 산업피해를 구제할 필요가 큰 중국으로서는 활용가치가 큰 조항이라 할 수 있다.

2) 인과관계

반덤핑조례 제8조 제3항과 관세법시행령 제63조 제4항은 덤핑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시켰음을 확정함에 있어 긍정적인 증거에 기초하며 동 피해를 야기 시킨 덤핑 아닌 요소를 덤핑에 귀결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덤핑이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의 진정한 이유가 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Ⅲ. 중국 반덤핑제도의 기본구조

1. 규범체계

중국은 1997년 3월 25일 국무원의 행정입법으로 총6장 42개 조문으로 구성된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례”(이하 ‘반덤핑조례’라 함)를 시행하였다. 이는 1994년의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30조¹⁰⁾ 및 제32조¹¹⁾에 근거한 것으로 중국 최초의 반덤핑관련 세부입법으로서 그 제정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참여한 이래¹²⁾ 밖으로는 중국제품이 외국에서 많은 반덤핑제소를 당하였고, 안으로는 덤핑이 의

9)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 제12조.

10) 주 4)참조.

11)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절차 근거규정.

12) 중국은 2001년 11월 10일 WTO 가입의정서 체결로 비로소 15년 만에 WTO에 가입하게 되었다.

심되는 외국제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여 국제규범이 허용하고 있는 산업피해구제 제도의 하나인 반덤핑조치를 채택하게 된 것이었다. 중국은「대외무역법」시행 이후 반덤핑 조항은 그 시행령이나 규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가, 1997년 상계관세 규제관련 6개 조문을 포함하는 총6장 42개 조문으로 된 「중국 반덤핑과 보조금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반덤핑조례는 대외무역법 제30조에서 규정한 반덤핑과 제31조에서 규정한 상계관세 관련규정의 시행규칙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후 2001년 11월 26일 국무원령 제328호로 반덤핑조례 6장 59조, 반보조금조례 6장 58조로 개정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1) 운용기구

중국에서의 반덤핑 관련 부처로는 상무부 공평무역구과 동 산업피해조사국, 關稅稅則委員會(이하 ; ‘關稅委’라함), 그리고 海關總署(이하 ; ‘稅關’이라함) 등이 있다. 조사절차는 덤핑조사와 피해조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된다.

첫째, 덤핑의 존재와 마진에 대해서는 공평무역국과 세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는데, 상무부는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산하에 공평무역국과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담당하는 부서로 산업피해조사국이 있다. 세관은 상무부의 산하부서로 반덤핑 관세를 징수한다. 관세세칙위원회는 국무원 산하의 관세율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둘째, 피해와 피해정도에 대한 조사는 피해조사국을 중심으로 국무원 관련 부서와 조사팀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피해조사국은 국가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세부적으로 국유기업에 대한 정책, 무역관련 정책 그리고 산업 구조조정을 그 주요업무로 한다. 피해조사의 주무부서로는 최근에 산하에 신설된 반덤핑 사무실이 담당한다. 공평무역국은 조사결정시 반드시 피해조사국과 협의를 하도록 하여, 조례의 운용에 있어 피해조사국의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운용절차

반덤핑 규제 절차를 살펴보면 첫째, 상무부의 조사개시 결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상무부는 국내산업의 덤핑조사 신청서 접수 후, 피해조사국과 협의하여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¹³⁾ 단 이때 신청서 접수 후 조사개시여부의 결정까지의 기한에 대한 언급은 없다.

둘째, 조사개시 결정 후 상무부와 피해조사국은 조사 후 예비판정을 한다.¹⁴⁾ 상무부는 덤핑의 존재에 대하여, 피해조사국은 피해에 대해서 각각 예비판정을 내린다. 만약 두 기구의

13) 중국반덤핑조례 제13조. 특수한 경우에는 직권조사개시도 가능하다(동 제14조).

14) 중국반덤핑조례 제17조.

결정이 긍정적이면, 임시 반덤핑관세 징수 결정은 관세세칙위원회가 하고, 잠정조치는 상무부가 한다. 조사 개시부터 예비판정까지의 기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최종판정 시한은 12개월이며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18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다.¹⁵⁾

셋째, 두 기구는 예비판정 후 최종판정을 내린다. 단 덤핑과 피해 부존재 시와 수출국정부나 기업이 가격인상약속 혹은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 감소 시는 상무부는 직권으로 반덤핑 조사 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두 기구가 덤핑과 피해가 존재한다고 최종판정을 하면, 관세세칙위원회는 반덤핑 관세 징수를 결정한다. 한편 제소자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예비판정 또는 최종판정시 덤핑이나 피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덤핑마진 또는 수입물량이 미미하여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덤핑조사는 종료된다.¹⁶⁾ 다만, WTO 반덤핑협정 제5.8조와 같은 덤핑마진 2%기준이나 수입량 3%기준은 반덤핑조례에 규정된 바 없다.

덤핑의 정의와 관련하여 중국의 반덤핑조례는 “덤핑이란 정상적인 무역과정에서 수입제품을 그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장에 진입시키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¹⁷⁾ 여기서 덤핑의 정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무역과정”이란 표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장에 진입”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장진입이란 표현은 WTO 반덤핑협정 제2.1조¹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물품이 …(중략)… 타국의 상업권내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을 고려하여 단순한 환적 등을 거치는 상품을 반덤핑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정상적인 무역과정”이란 표현이 조례에 반영된 의미는 다소 불분명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반덤핑협정의 내용에 비추어 판단하여 본다면 정상적이지 못한 무역과정 즉, 협정 제2.3조¹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출가격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의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하여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덤핑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5) 중국반덤핑조례 제15조.

16) 중국반덤핑조례 제1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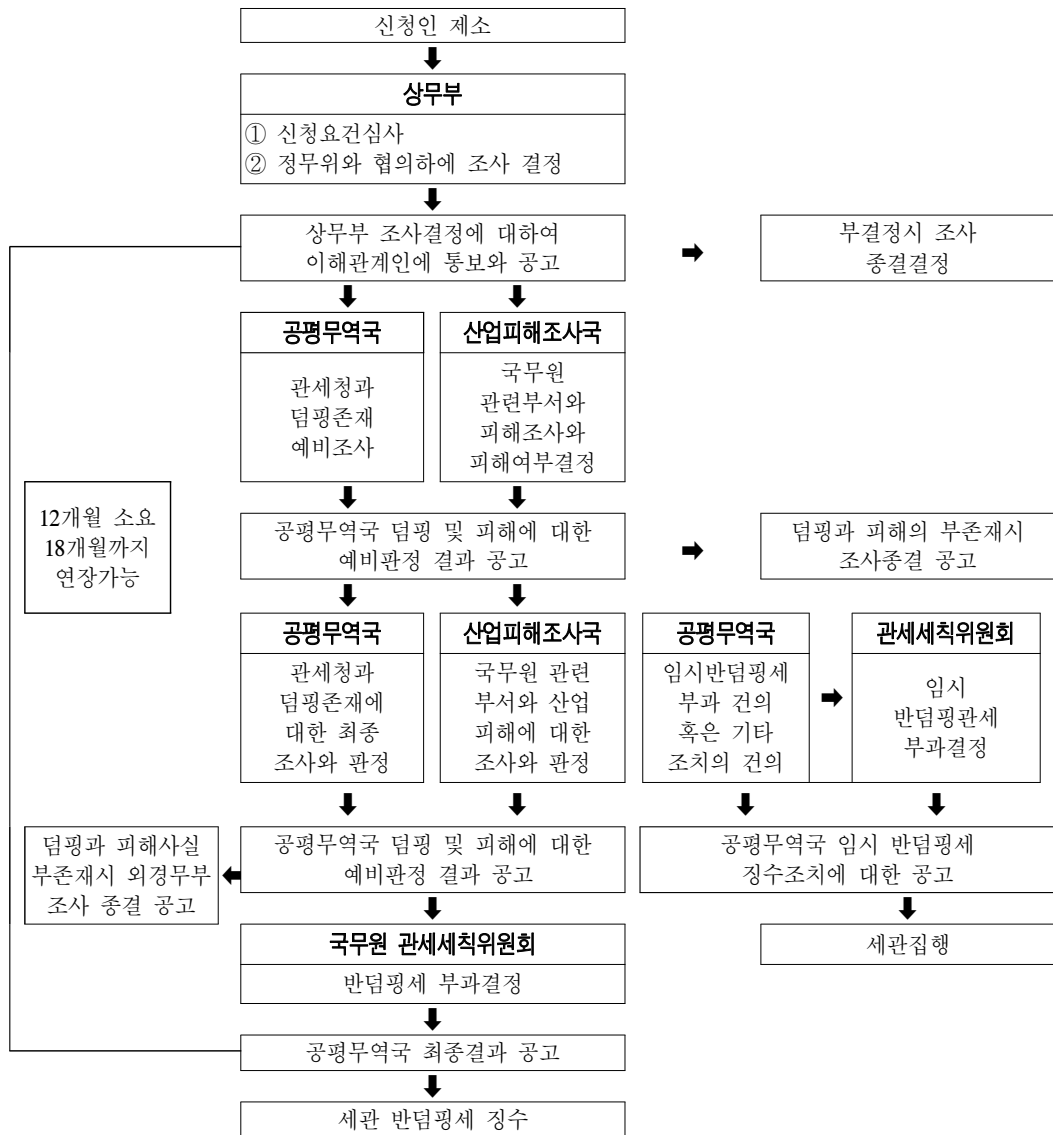
17) 중국반덤핑조례 제3조.

18) …수출된 물품의 가격이 수출국에서 소비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동종물품에 대한 통상의 상거래에 있어서의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당해물품이 덤핑된 것으로, 즉 어떤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국의 상업권내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WTO 반덤핑협정 제3조)

19)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수출가격이 수출자 및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의 제휴나 보상협정 등으로 믿을 수 없다고 관계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수출가격은 수입품이 독립된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 되는 가격을 기초로 구성하고, 독립된 구매자에게 재판매 되지 않거나 수입된 상태로 재판매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국이 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성될 수 있다. (WTO 반덤핑협정 제2.3조)

(3) 통상거래가격

중국반덤핑조례 제4조에서는 “수입제품의 동종제품이 수출국(지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거래과정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이 있을 경우 동 비교 가능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격을 정상가격산정과정에서



자료 : 중국 반덤핑조례 제3장 제13조 제52조.

<그림 1> 중국 반덤핑제도 운용체계

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WTO 반덤핑협정 제2.1조²⁰⁾의 내용을 중국의 반덤핑조례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WTO 반덤핑협정 제2.2조²¹⁾에서는 내수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Viability기준(5%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또 협정 제2.2.1조²²⁾에서는 내수 판매에서 원가미만인 판매가 총판매량의 20%²³⁾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러한 내수판매가격 자료를 통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정상가격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상가격의 산정과 관련된 반덤핑협정의 내용 뿐 아니라 반덤핑협정에서 정상가격의 산정과 관련하여 기술하고 있는 수출자의 회계자료 이용에 관한 제 2.2.1.1조 및 제2.2.2조의 내용에 대하여도 중국의 반덤핑조례에서는 언급이 없다.

(4) 제3국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

중국에 대한 수출품과 동종인 제품으로서 통상적 거래에 해당하는 수출국의 내수판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정상가격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구성가격과 제3국 수출가격에 의한 내수가격 산정 시 방법선정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점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현행 반덤핑협정 제2.2조 자체가 정상가격의 선정에 있어서 구성가격과 제3국 수출가격간에 우선 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덤핑협정위반에 관한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덤핑마진의 산정

중국반덤핑조례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와 관련하여 가중평균가격을 비교하는 방식, 개별거래가격을 비교하는 방식 및 평균가격과 개별수출거래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을 선택적

-
- 20) 이 협정의 목적상,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수출된 물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에서 소비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동종물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 있어서의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당해물품이 덤핑된 것으로, 즉 어떤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국의 상업영역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WTO 반덤핑협정 제2.1조)
- 21)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판매가 고려대상 물품의 수입국내 판매의 5% 또는 그 이상을 점하는 경우 이러한 판매는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충분한 규모가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국내 판매 규모가 동 비율이하일 경우에도 그것이 수출가격과 비교 가능하다는 증거가 제시될 경우에는 인정되어야 한다. (WTO 반덤핑협정 제2.2조에 대한 주석 2)
- 22)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판매가격 또는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이 생산단가(고정 및 가변비용)에 판매비, 일반 행정비용을 합한 가격이하일 경우, 당국이 이러한 판매가 상당기간동안, 상당량 계속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총비용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판매는 가격을 이유로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정상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고려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만약 판매시 비용이하인 가격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의 가중평균 비용보다 높은 경우, 동 가격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비용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WTO 반덤핑협정 제2.2.1조)
- 23) 정상가격 결정을 위해 고려되고 있는 개별거래의 가중평균 판매가격이 가중평균 단위비용이하이거나 단위비용이하의 판매규모가 정상가격 결정을 위해 고려되고 있는 거래에서 판매된 양의 적어도 20% 이상이 된다고 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단위비용이하의 판매가 상당량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WTO 반덤핑협정 2.2.1조 주석 5)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균가격과 개별거래가격을 비교하는 경우는 수출가격이 수입자, 지역, 수입시기별로 큰 차이가 있어 평균가격 대 평균가격 또는 개별가격 대 개별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내용이 WTO 반덤핑협정과 일치된다. 다만,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비 가능성 요소를 감안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비교를 실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반덤핑협정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비교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²⁴⁾들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반덤핑조례의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3. 확정반덤핑관세의 부과

(1) 확정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징수

중국의 경우, 반덤핑관세의 징수는 상무부가 건의하여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가 동 건의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무부가 이를 공고한다. 세관은 공고에서 규정한 집행일자로부터 집행한다.²⁵⁾ 반덤핑 관세액은 최종판정에서 확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으며²⁶⁾ 덤핑물품의 수입자가 반덤핑관세를 납부한다.²⁷⁾

한국의 경우,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²⁸⁾ 기획재정부장관이 반덤핑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반덤핑관세의 부과조치를 한다.²⁹⁾

(2) 반덤핑관세의 소급적 징수

반덤핑조례 제43조 제2항, 제44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실질적 피해 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적인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 동안 수입된 물품, 비교적 단 기간 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하는 실

24) 반덤핑협정 제2.4조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시에 동일한 거래단계, 통상적으로 공장도 단계에서 가능한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기술하고 제반 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의 차이, 환율의 변동 등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 반덤핑조례 제38조

26) 반덤핑조례 제42조

27) 반덤핑조례 제40조.

28) 관세법시행령 제61조 제5항.

29) 관세법시행령 제61조 제7항.

질적 피해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과거에 덤핑되어 실질적 피해 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로부터 90일 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 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이다.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보통의 경우라면 반덤핑관세가 잠정관세보다 높은 경우 반덤핑관세의 소급적용에도 불구하고 그 차액은 징수하지 않는 것인데,³⁰⁾ 가격약속 위반의 경우는 이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해당 기업이 약속을 준수하지 않아 조사가 재개되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해도 특별히 이러한 경우에 반덤핑관세와 잠정관세간의 차액을 해당 기업에 부과시켜야 할 근거는 찾기 힘들다. 더구나, 수출국 기업이 가격약속을 위반하게 되면 상무부는 어차피 입수 가능한 정보에 의한 판정에 따라 잠정관세를 즉시 부과하게 되므로 가격 약속 위반에 대한 법률적 대처는 충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¹⁾

(3) 확정반덤핑관세의 부과³²⁾

반덤핑조례와 관세법은 모두 반덤핑조치의 기한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³³⁾ 동 기한 내에, 상무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반덤핑관세의 계속적인 부과 필요성에 대한 재심의 진행을 결정할 수 있으면 일정한 합리적 기간이 경과한 후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관련 증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반덤핑관세의 계속적인 부과 필요성에 대한 재심의 진행을 결정할 수 있다.³⁴⁾ 기획재정부장관 역시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는 때에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재심여부를 결정한다. 재심 신청은 반덤핑조치의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반덤핑조치의 효력이 상실 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³⁵⁾ 즉, 양국 모두 조사기관의 직권에 의한 재심의 개시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재심의 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한국의 경우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 장관 역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중국에 비해 요청의 도

30) 반덤핑조례 제43조.

31) 이기희, 전제논문, 187면.

32) 반덤핑조치의 재심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마광,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 행정재심사제도』(서울:한국학술정보, 2007) 참조.

33) 반덤핑조례 제48조, 관세법 제56조 제2항.

34) 반덤핑조례 제49조 제1항.

35)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항.

경이 더욱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재심의 요청시기와 관련하여 반덤핑조치의 적용 이후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심의 요청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반덤핑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고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역시 규정상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나, 실제사례에서 보면 동 기한을 60일 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중국은 상무부가 반덤핑조치종료 6월 전에 공고를 내어 재심신청을 제출하고자 하는 국내 산업은 동 공고 이후 및 반덤핑조치종료 60일 전까지 재심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실무에 있어 반덤핑조치종료 60일 전까지만 재심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⁶⁾

재심의 기간과 관련하여 중국은 재심개시일로부터 12월내에³⁷⁾ 상무부가 반덤핑관세의 유지, 수정 또는 취소를 건의하고 국무원관세세척위원회가 동 건의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상무부가 이를 공고한다.³⁸⁾ 한국의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심 개시일 부터 6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월의 범위 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³⁹⁾ 즉 재심 기간의 경우 중국은 12월 소요되고 한국의 경우 11월 20일 좌우가 소요되므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재심이 상당히 빨리 수행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4) 신규수출자 재심

반덤핑 조사 대상기간 중 수입국에 덤핑혐의가 있는 물품은 수출하지 않은 관련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신규수출자’라함)는 반덤핑조치의 발효 후 그들에 대해 단독의 반덤핑세율을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면 이것을 신규수출자재심이라고 부른다. 반덤핑 신규수출자재심 잠정규칙 제4조와 관세법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하면,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수출자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별도의 반덤핑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36) 마광, “중국과 한국의 반덤핑 행정재심사제도 비교연구,” 『국제법률경영』 제44호(2006.10), 96면.

37) 반덤핑조례 제51조 제2항.

38) 반덤핑조례 제50조.

39)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5항, 제6항.

또한 중국의 경우 신규수출자재심 신청인은 반드시 반덤핑원심기간 이후 중국에 덤핑혐의가 있는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적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서 수출은 일정한 수량이어야 하며 정상수출가격을 확정할 수 있는 기초를 구성하여야 한다. 동 수량은 조사대상 물품의 정상적인 상업거래량에 따라 확정한다.⁴⁰⁾ 한국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사례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알카리망간 건전지사건에서 무역위원회는 재심대상기간 중 신청인이 한국에 수출한 물량은 같은 기간 중 신청인과 특수 관계가 있는 Energizer Singapore사의 대 한국 수출물량에 비해서나 신청인의 재심대상기간 이후 대 한국 수출물량에 배해서도 미미한 물량임을 감안할 때, 동 물량은 상업적인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⁴¹⁾

이 밖에 한국의 관세법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하면,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 수출자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공급자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Korea-Paper AD Duties사건에서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6.10조가 별개의 법인을 반드시 독립된 수출자나 생산자로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특별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신규수출자재심에 관한 제9.5조의 문맥이 참고할 만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즉 제9.5조는 신규수출자가 기존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이 수출자, 생산자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이들에 대해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산정하라는 것이므로 만일 신규 수출자가 비록 기존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인 수출자와는 별개의 회사라 할지라도 양자가 관련이 있다면 개별 덤핑 마진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보았다.⁴²⁾ 즉 신규 수출자가 이미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은 기존의 회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기타 회사의 세율이 아니라 그 회사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관련법령과 실천에서는 아직 이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지만,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라고 사료된다. 신규수출자재심은 조사개시일로부터 9월을 초과하지 않으며⁴³⁾ 한국의 경우 단지 신규 수출자에 대하여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⁴⁴⁾고만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산 알카리망간 건전지사건에서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통합해 실시하고, 조사는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었다.⁴⁵⁾

중국의 경우, 신규 수출자 재심에서 피해판정은 내리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관세법시행

40) 반덤핑신규수출자재심잠정규칙 제5조.

41) 무역위원회, “중국산 알카리망간 건전지 신규공업자에 대한 재심사 판정의결서,” 무역위원회 의결 제2002-24호.

42) WTO, Korea-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ertain Paper from Indonesia: Report of the Panel, WT/DS312/R, 28 October 2005, para. 7.159.

43) 반덤핑신규수출자재심잠정규칙 제24조.

44) 관세법시행령 제65조 제3항.

45) 무역위원회, *Supra* note 49.

규칙 제17조 제3항에서 “신규수출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는 공급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여 외견상 피해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신규수출자재심의 경우, 별도의 피해판정을 하는 것은 필요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원심에서 피해판정이 내려졌고 그에 기초하여 5년간 반덤핑조치가 부과되기 때문이며, 신규수출자재심에 있어 피해판정을 별도로 하는 경우 기존조사와 다른 신규조사로 될 것이다.

(5) 중간재심과 종료재심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2조에 의하면, 중간재심은 덤핑마진중간재심, 산업피해중간재심 및 종합 재심 등으로 구분된다. 덤핑마진중간재심은 반덤핑관세율 또는 가격인상 약속수준의 변경여부만을 재심사하는 경우를 말하고 산업피해중간재심은 기존 반덤핑조치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유무를 재심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종합재심은 덤핑마진중간재심 및 산업피해 중간재심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중국의 경우 역시 세 가지 경우의 중간재심을 규정하고 있다. 단지 덤핑·덤핑마진 중간재심 잠정규칙의 경우 전에 덤핑판정만 주관하던 대외무역 경제 합작부에서 제정한 법령이므로 덤핑마진 중간재심에만 적용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상술한 잠정규칙을 통해 덤핑마진 중간재심에 대해 아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의 만료 전 1년 내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 국내수입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중간재심이 반덤핑조치의 종료 시 종결되지 않고 또한 국내 산업이 종료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상무부도 자체적으로 종료재심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상무부는 공고를 하여 중간재심을 종료하고 또한 반덤핑조치의 집행을 종료하여야 하며⁴⁶⁾ 반덤핑조치의 만료 전 1년 내에 국내 산업이 신청한 중간재심이 반덤핑조치의 종료 시 종결되지 않는 경우, 상무부는 국내 산업이 이미 종료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공고하고 종료재심을 시작한다. 상무부는 중간재심을 함께 진행하고 동시에 판정을 내릴 수 있다.⁴⁷⁾

종료재심은 반덤핑조치의 종료 전에 국내생산자 또는 조사기관의 직권에 의해 신청되어 반덤핑조치의 종료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이다. 이러한 재심과 관련하여 양국 모두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양국 모두 원심에서와 같은 실체적, 절차적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심에 비해 빠른 기간 내에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한국의 경우 종료재심에 따른 반덤핑조치의 부과기간은 일반적으로 원심조사에서의 부과기간보다 짧으며

46) 덤핑·덤핑마진중간재심장정규칙 제39조

47) 덤핑·덤핑마진중간재심장정규칙 제40조

다수는 2-3년간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중국과 구분되는데 중국은 대부분 5년간 기존 반덤핑관세를 연장하고 있다. 한국의 무역위원회는 반덤핑조치에 대해 더욱 자주 검토하게 되며 국내 산업의 경영실적이 훌륭하면 실질적 피해의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증거로 되기도 한다.⁴⁸⁾

(6) 관세환급제심과 연례제심

관세환급제심은 덤핑물품의 수입자가 이미 납부한 반덤핑관세 금액이 실제의 덤핑마진을 초과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절차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경우 반덤핑관세환급잠정규칙을 이용하여 그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양국 모두 수입자만이 반덤핑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⁴⁹⁾ 있는 데 이는 양국에서 모두 반덤핑 관세의 실제 납부자가 수입자로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상술한 네 가지 유형의 제심에 더해 연례제심을 규정하고 있다. 즉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술한 제심을 하는 경우 외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율 및 시행 중인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제심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반덤핑관세 또는 약속의 내용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연례제심 규정은 한국에게 독특한 제도로 보인다. 또한, 반덤핑협정상으로도 이와 같은 연례제심을 의무화 하지는 않고 있다. 미국과 같이 반덤핑관세를 소급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연례제심은 반덤핑 관세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이나, 한국과 같이 반덤핑관세를 장래에 향하여 부과하는 경우, 이러한 연례제심은 제도 운영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다만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환급제심 또는 중간제심을 하면 되는 것이다.⁵⁰⁾

IV. 중국의 반덤핑제도 대응방안

기업들은 국내에서의 과다 생산분을 처분하기 위해서 또는 수요의 변동과 같은 시장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덤핑을 할 수 있으며, 혹은 최소한 개념적으로는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축출하고 추후에 독점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약탈적 의도에서 덤핑을 할 수도 있다. 그러

48) 마광,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 종료제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1호(2007. 6), 83면.

49) 반덤핑관세환급잠정규칙 제3조,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6조.

50) 김형진, “우리 덤핑방지조치의 제심사,” 『통상법률』 제23호(1998.10), 78-79면.

나 덤핑의 동기가 무엇이든 덤핑은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장지배력이 존재하고 국제적으로는 분리된 시장이 존재할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가격 차별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어렵다. 따라서 가격차별과 덤핑은 사실상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바, 경쟁정책에서 가격차별의 개념이 무역정책에서는 덤핑의 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양자 간의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무역정책에서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의 수출, 즉 모든 가격차별이 반덤핑 조치의 대상이 되는 반면, 경쟁정책에서는 일반적 개념의 가격차별보다는 약탈적 가격설정이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반덤핑법은 외국기업의 저가판매로부터 자국기업을 보호하려는 데에 규제의 일차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국내가격과 수출가격과의 차이가 규제대상이 되며, 경쟁법은 국내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데에 규제의 일차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쟁자를 시장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약탈적 가격설정이나 부당염가 판매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탈적의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반덤핑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학적 당위성이 없으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내 산업을 외국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주의적 효과만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반덤핑제도는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기 위한 최상의 정책(first best policy)이 아니며, 오히려 최상의 정책은 독점적 지배를 감소시킴으로써 덤핑을 할 수 있는 능력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현행 반덤핑제도를 폐지하고 덤핑규제는 경쟁정책과 경쟁법 하에서 다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와 같은 개선이 어려울 경우 반덤핑의 원칙 및 절차를 경쟁법의 원칙 및 절차로 대체함으로써, 가능한 한 반덤핑정책을 경쟁정책과 보다 많은 연관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덤핑혐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약탈적 독점적 가격차별이 입증되도록 하며,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경쟁원칙과 절차에 따라 관련 가격설정행위의 반경쟁적 효과가 입증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약탈적 의도의 입증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탈적 가능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그와 관련된 특정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덤핑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장점유율 및 집중률(concentration ratio) 등이 일정수준을 초과하거나, 혹은 평균비용 또는 한계비용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약탈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 그와 같은 경우에도 당해 산업의 특성 및 경기변동이나 환율변동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덤핑규제를 경쟁정책이나 경쟁법 하에서 다루는 데에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있다. 첫째, 국내에서의 불공정한 가격차별을 다루는 경쟁법의 기준이 국제무역에서의 불공정한 가격차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불공정한 가격차별에 대한 규제가 국내의 불공정한 가격차별에 대한 규제와 일치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덤핑규제에 있어서의 내국민대우원칙의 보장은 반덤핑규제가 보호무역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를 초월한 경쟁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 활동의 범세계화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각국 시장 간의 연관성은 한층 증가되고 있으며, 경영환경 역시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경쟁법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들이 동의하는 다자간 규범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지만, 그 이전에 각국이 경쟁법을 도입하고 그에 대한 정보교환 및 상호인정 등을 통하여 협력적인 법집행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셋째, 경쟁정책 및 경쟁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진입장벽의 증가 및 특정 무역제한조치로부터 발생하는 경쟁감소라고 할 수 있다.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한, 범국가적 경쟁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자유무역은 시장개방을 통하여 특정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감축시킴으로써 덤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위축시키는 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장 간의 가격차별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덤핑은 경쟁정책 및 경쟁법 하에서 효과적으로 규제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당위성이 결여된 반덤핑제도의 필요성은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덤핑을 제거하는 데에는 결국 경쟁정책 및 경쟁법의 강력한 시행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지역무역협정에 있어 반덤핑규정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국제무역에서 덤핑 자체가 비난(*condemn*)받을 수는 있지만, 수입국의 소비자 후생 관점 등에서 보면 반덤핑규제는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대기업이 자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통하여 수입국 시장을 침탈할 목적으로 덤핑 등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수입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개별 국가의 반덤핑법은 WTO 반덤핑협정과 명시적인 적합성은 존재하나 개별국가마다 그 운용 및 절차상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과 같이 반덤핑운용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도 있는 반면에 반덤핑조치를 행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전혀 반덤핑조치를 활용하지 않는 국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반덤핑법의 운용

과 절차는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⁵¹⁾

셋째, FTA 등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 역내국간의 상품교역에 있어 자유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분석하여 이와 관련하여 수출확대가 효율적인지 아니면 자국 산업의 피해구제가 선결되어야 할 조치인지를 먼저 분석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는 반덤핑법을 역내국간에 적용하는데 있어 폐지할지 또는 강화된 조치를 활용할지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반덤핑법과 경쟁법은 일반적으로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으로 대변되어 논쟁이 이루어져왔다. 무역정책의 경우를 보면 본래 자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이익이 생산자의 이익과 같은 정도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무역정책은 국가 전체의 후생증진이 이념적인 목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생산자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법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경쟁정책의 주된 목적은 생산자의 보호가 아니며 오히려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⁵²⁾ 이러한 점에서 반덤핑규범과 경쟁규범의 상충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조화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 지역무역협정에 있어 수입국의 반덤핑제도가 있을 경우 해당 수출국의 경쟁정책 당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해 경쟁정책 당국은 수출기업의 덤핑이 반경쟁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에 긍정적인 판정이 나올 경우 수입국은 이에 대한 피해구제조치를 취하되, 부정적인 판정이 나올 경우 이를 WTO체제 안에서 해결 방안을 취하면 될 것이다. 또한 지역무역협정에서 경쟁법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한계가 있음으로 인하여 모델법적인 차원의 경쟁법을 통하여 역내국간의 채택을 통한 지역무역협정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WTO 차원에서도 경쟁정책의 도입에 있어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가 무역규범을 논의하는 WTO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당위성이 성립되지 못하였고 둘째,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적 협력은 양자협정으로 접근 할 수도 있는바 WTO 다자경쟁규범이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다자협정이 왜 양자협정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경제발전단계가 각기 다른 국가 간 실체 규정이 수립되기 어렵기 때문인 이유가 있다. 특정 경제행위의 경쟁적 효과는 시장구조, 경쟁자간의 질적 차이, 경제발전 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으로 이로 인한 규정을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⁵³⁾ 양자 간의 지역무역협정

51) 김석민, “중국의 반덤핑 제정규정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국제지역학회, 2006.9, p.211.

52) 조영재, “반덤핑 조사대상 범위에 관한 연구”, 무역구제, 제24호, 무역위원회, 2006.10, pp110-116.

등에서는 보다 용이한 경쟁법의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역내 국간 일정한 모델규범을 통한 경쟁법을 채택한다든가 경쟁법에 대한 내용을 상호 협상을 통하여 경쟁법의 내용을 조절해 나갈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나아가 다자체제와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도 있다. 즉, 여러 국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근의 기업 활동의 추세에 있어 지역무역협정만을 통하여 규제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경쟁법의 법적 구속력을 갖고 경쟁법의 적용 등에 대한 해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WTO체제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V. 결 론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반덤핑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가격차별이나 비용이하 판매는 건전한 시장경제에 있어서 매우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가격설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그와 같은 행위가 약탈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경우, 이는 반경쟁적 보다는 소비자의 복지향상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적극적이고 공정한 경쟁적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이 약한 국내 산업을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반경쟁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인 효과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적 당위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덤핑에 대한 기계적 정의에 기초한 현행 반덤핑제도는 불공정한 가격설정 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있어서 최선의 정책수단이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덤핑의 반경쟁적 효과 및 약탈적 의도에 근거한 강력한 경쟁정책의 실시가 최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경쟁정책의 실시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약탈적 가격설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덤핑의 근원자체를 없애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며, 따라서 현행 반덤핑제도의 필요성은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동시에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에 있어서 반덤핑조치를 강화하거나 또는 경쟁법으로 대체하여 협상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을 위해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반덤핑법의 규정 강화를 위한 현재 운영 중인 반덤핑규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53) 윤미경, "WTO 경쟁규범 협상 : 문제점의 분석과 재정방향의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9, 제9권 제3호, p.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경쟁법에 가장 적합한 법규범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있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 경쟁규범을 입안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반덤핑제도를 단기적으로 철폐하거나 경쟁정책으로 대체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선 모든 국가가 일정수준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을 도입해야 하며, 그에 대한 국가 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덤핑제도가 경쟁정책으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라고 하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국가들 간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의 조화와 상호 인정방식에 대해 협의하고 이행하는 중간단계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중국의 반덤핑조례는 기본적으로 WTO 반덤핑협정에 기초하였으며 그 밖에도 반덤핑 관련기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중국 상무부 공평무역국이 덤핑 및 덤핑마진을 조사하고 동 피해조사국이 피해 및 그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한 것은 미국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반덤핑 조사인력의 수나 전문성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며 또한 관련기관이 여러 기관으로 중첩되어 있어 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반덤핑조례에는 반덤핑조사 신청자의 자격이나 동종제품, 미소수량 등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원론적인 규정이 많아 그 내용이 불투명하며 이로 인하여 실무상 관련기관의 재량이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중국의 반덤핑법령은 수량이 많고 중복 내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각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이 이루어져 사건에 대응하는 업체들에게 편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반덤핑조치의 부과와 관련하여 공공이익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비록 관세법 제51조에 “당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문구가 어찌 보면 공공이익을 지칭하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공공이익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 예로 최근의 미국·중국·싱가포르산 폴리비닐알코올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최종판정 의결서를 들 수 있다. 공공이익 요건의 도입은 조사당국으로 하여금 국내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수입업체, 하위 업체, 소비자 등 각 이익집단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적인 관점 내에서 유리한 경우에 한해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반덤핑 운용절차가 당국의 내부 규정에 맡겨져 있어 투명성 결여의 문제가 있고, 조

사시한을 최장 18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계별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소기업들이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반덤핑조치로 인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중국이 향후에 세계 최대시장의 하나로 등장하고 그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제품이 중국시장에서 중국제품과 경쟁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중국은 장래 세계 최대의 반덤핑조치국의 하나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우리나라의 3대 교역 상대국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에 예상되는 중국의 반덤핑공세는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에 큰 장애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덤핑 조례 및 관행이 갖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 및 WTO 반덤핑위원회를 통한 이의제기 등 많은 연구 활동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은 최대의 반덤핑조치 부과 대상국인 한편, 반덤핑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며,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 등 이웃국가들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중국의 반덤핑제도와 실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서로간의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석민, “중국의 반덤핑 재심규정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국제지역학회, 2006.9.
- 김승호,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 법영사, 2007.
- 노 광·김지영, “세이프가드조치 규범의 RTA에의 작용에 관한 연구”, 「Trade Remedy Review 2007-겨울」, 무역위원회, 2007. 12.
-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제도 이해하기」, 무역위원회, 2009.
- 박형래·박영기, 「산업피해구제와 대외무역법」, 두남출판사, 2006.
- 법무부, 「자유무역협정의 법적고찰」, 국제법무과, 2003.
- 법무법인 충정, 「1차 생산품의 반덤핑조사방법에 대한 연구」, 무역위원회, 2012.10.
- 법무법인 태평양, 「덤핑률 산정시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무역위원회, 2011.10.
- 안민호, “DDA 규범협상의 반덤핑협정 관련 주요 쟁점”, 「국제경제법연구」제7권 2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9.11.
- 윤미경, “WTO 경쟁규범 협상 : 문제점의 분석과 재정방향의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9권

- 제3호, 2003.9.
- 오문갑,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와 한국의 반덤핑제도 대응전략”,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2호, 2013.6.
- 이재영, “지역무역협정에 있어 반덤핑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009.9.
- 임병우, “반덤핑절차에서의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확정에 관한 몇 가지 실무적 문제점 및 제언”, 「무역구제」 제23호, 2006.7.
- 조영재, “반덤핑 조사대상 범위에 관한 연구”, 「무역구제」 제24호, 무역위원회, 2006.10.
- 하충룡·한나희, “반덤핑법의 적용에 관한 사례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9.
- 하충룡·한나희, “사례를 통한 미반덤핑법상 상품의 범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9.9.
- 하충룡·한나희, “USITC의 반덤핑 피해판정에서의 동종상품과 국내산업의 해석범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12
- Bernard M. Hoekman and Petros C. Mavroidis, “Dumping, Antidumping and Antitrust”, *Journal of World Trade* 30(1), 1996, p. 34.
- Chung, Y. S. An Empirical study of Success Factors Influencing the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System Outsourcing the University of Nebraska, 1996, pp.34-40.
- Clarisse Morgan, Competition Policy and Anti-Dumping, *Journal of World Trade* 30(5):61-88, 1996.
- Michael J. Trebilcock, Competition Policy and Trade Policy, *Journal of World Trade* 30(4):71-106, 1996.

ABSTRACT

A Study on the issues and measures of the China's Anti-dumping law

Moon-Kap Oh*

China having largest market in the world, has been criticized by its trading partner countries due to its unfair trade practices,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anti-dumping regulation. The main reasons for such criticism seem to come from the incomplete anti-dumping law as instrument to protect the industry concerned.

In 2001, though new anti-dumping law was established to replace the former one by revising it to meet the needs for economic development which should be secured for china to take part in the competition world as the new member of WTO. The provisions concerned have been evaluated not to be sufficient and effici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safeguard mechanism, while are required to be modified to meet the real world of international trade law.

I consider that as the biggest partner of chinese trade activity, we will need to maintain a well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anti-dumping regulations. So this report conducts the Chinese anti-dumping regulations, compares between the chinese regulations and the WTO agreement, and studies deeply in to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s of the Chinese anti-dumping regulations.

Key Words : China, Anti-dumping Law, Application, Countermeasures

* Professor, Dept, of International Trade, Semyung University